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45

발의연월일: 2025. 1. 20.

발 의 자: 강경숙・김준형・정춘생

김문수 · 김준혁 · 박은정

백승아 · 황운하 · 문정복

정을호 · 서왕진 · 신장식

김선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인력 배치, 취학편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물적·인적 지원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진로·취업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. 장애학생이 학업적·사회적·정서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추가하여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1항제6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1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지속적인 상담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편의제공 등) ① 대학의	제31조(편의제공 등) ①
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	
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	
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	
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	
야 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.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
	학생의 지속적인 상담지원
<u>6</u> . (생 략)	<u>7</u> . (현행 제6호와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